

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장학 및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25. 12. 12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장학 및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「부산대학교 학칙」, 「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」 및 「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」 등 상위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장학 및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장학업무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
2. 장학기금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
3. 장학업무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
5. 「국한의발전재단」 등 외부 장학재단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대학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
7. 학생의 생활지도방법 개선 및 상담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
8. 학생생활의 문제점 파악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
9.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학생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10. 학생 건강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
11.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학생상담 결과에 대한 피드백
12. 그 밖에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 및 학생지도 관련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학부원장이 된다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장이 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한의학과장
2. 한의과학과장
3. 학사과정 주임교수
4. 한의학교육실장

5. 석사과정 1~4학년 지도교수

6. 학사과정 1~3학년 지도교수

④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필요시 학생대표 또는 관계자를 협조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대학원 장학 및 학생지도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및 지도교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.

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또한 위원 중 1/4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대학원 교수회의에 보고한다.

제6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유지의 의무)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시 특정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③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세칙) ① 위원회는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② 시행세칙의 제정·개정 및 폐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결한다.

부칙(2025. 12. 12.)

이 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